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	성남시인터넷 시스템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골자 ·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안 제3조~안 제7조)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안 제8조)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안 제12조~안 제7조) · 전자우편 ID 보급(안 제14조~안 제15조)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안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안 제17조)	정보통신과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2	성남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저금리 시대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용자금의 연체 이자를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용자금 지원 취지에 부합 되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중 일반용자금의 경우 기본금리 연 5%, 학자금용자금의 경우 무이자이나 상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히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토록 한것을“연 9%”로 하향 조정 (안 제4조제4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3	성남시공동급수 시설유지관리조 례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1988. 7. 12 조례 제875호로 제정되었으나, · 조례 제정의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99. 8. 8 폐지되었고 우리시에 공동급수시설(간이 급수시설,공동우물)이 폐쇄되었기 분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수도과	도시건설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4	성남시도시계획 조례중개정조 례안	☐ 제안이유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기존주택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 지목이“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 주거 지역내 30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 내지는 정비공장을 허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에 “다만 지목이 “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대”인 지목의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허용 ·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3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와 공장 또는 건축물이 금지된 폭 30미터 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 내의 자동차 정비공장 허용	도 시 과	도시건설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5	성남시주차장 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찰 기능 2회로 늘려 수탁 희망자의 수탁 기회를 확대하고 · 위탁 대행료 산정에 따른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여 위탁대행료 산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며 위탁 관리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노외 주차장의 이용자 편의 시설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자 편의 도모. ☐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의 수탁대상자를 공공관련 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자로하고 · 수탁 희망자에게 2회까지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위탁대행료 산출시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삭제 · 위탁관리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 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확대	교통행정과	도시건설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건명	부의안건요약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6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 대한 청원	• 소개의원 : 김대진 의원 • 청원자 - 주소 : 분당구 광내동 - 성명 : 김동일의 170인 • 청원의 취지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4항 별표15에는 보존 녹지 지역안에서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4항 별표 14에는 제1종 근린 생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은 건축할 수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2종 근린시설을 건축 할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청원임	도시과	도시건설위원회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7	성남시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이유 기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세입증감등 여건변동으로 세입·세출 정리가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주요골자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2001년도 기정예산</th><th>2001.제2회 추경예산액</th><th>증 감</th><th>%</th></tr> </thead> <tbody> <tr> <td>계</td><td>785,051</td><td>807,140</td><td>113,519</td><td>16.3</td></tr> <tr> <td>일반회계</td><td>527,916</td><td>541,822</td><td>62,183</td><td>13.0</td></tr> <tr> <td>특별회계</td><td>257,135</td><td>265,318</td><td>51,336</td><td>24.0</td></tr> </tbody> </table>	구 분	2001년도 기정예산	2001.제2회 추경예산액	증 감	%	계	785,051	807,140	113,519	16.3	일반회계	527,916	541,822	62,183	13.0	특별회계	257,135	265,318	51,336	24.0	기획예산과	행정경제
구 분	2001년도 기정예산	2001.제2회 추경예산액	증 감	%																				
계	785,051	807,140	113,519	16.3																				
일반회계	527,916	541,822	62,183	13.0																				
특별회계	257,135	265,318	51,336	24.0																				
8	성남시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 제안이유 ○백궁역세권 주변도로 확장부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하고, 폐도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매각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되어 학교시설로 편입된 사유지는 매각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공공용부지 확보등 효율성 높은 재산으로 대체 조성하고자 하며, ○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이 2001. 8. 20일 현재 50% 분양되는 추세에 맞춰 상가 분양을 하여 입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며,	회 계 과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인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은행 2동 시영아파트 건립지역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공원조성과 주차공간의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 의결을 일고자함. □ 주요골자 ○ 취 득(매입) · 토 지 9필지 1,250.8㎡ 1,750,560천원 · 건 물 10동 4,070.76㎡ 4,487,045천원 ○ 처 분(매각) · 토 지 36필지 27,015.5㎡ 31,850,162천원 · 건 물 4동 1,140.7㎡ 207,364천원		
9	성남시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폐지 및 장사등에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 폐지 법률에 의거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현행시행 법률로 일치시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하는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폐지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 ○ 분묘설치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이 현행시행 법률에 신설되어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총 무 과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0	성남시지방행정 동우회육성및 지원조례안	○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중 공설묘지의 사용 허가, 공설묘지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사무를 시로 환원함(안 별첨) □ 제안이유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분회를 지원·육성하여 시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우회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 (안 제2조) · 시정모니터 활동 등 시정홍보사업 ·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 민원상담 및 주요시책 자문 · 기타 시 행정발전에 관한 사항 ○ 시장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안 제4조) ○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 (안 제5조 제2항)	총 무 과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인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1	성남시지방공사 등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1991년 1월 7일 제정된 성남시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94년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정시(지방공사 과세면제 내용 포함)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세 정 과	행정경제
12	성남시근로자종합 복지관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직제가 폐지(2000. 10. 31)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을 수탁 또는 임차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근로자의 능력개발 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 단체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위탁 또는 임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8조제1항)	지역경제과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3	성남시근로여성 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직제가 폐지(2000.10.31)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종전에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자는 사회단체로 한정하였으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현 실정에 부합 되도록 조정(안 제4조)	지역경제과	행정경제
14	성남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성남시에 소재하는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분양)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업체 및 벤처기업확인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자가공장 마련과 지역의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 종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이 공장 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관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을 구입(분양)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업체 및 벤처기업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및제8조제2항) ○ 기금의 용자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과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구입자금(분양)에 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지역경제과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위 회
15	성남시디자인 도시선언문동의 안	☐ 제안이유 코리아디자인센터 개관과 ICSID총회 개막에 맞추어 개최되는 디자인도시 성남 선언식 시 디자인도시 상징조형물 제막과 함께 「성남시 디자인도시 선언문」을 낭독 우리시를 「디자인 도시」로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선언식 개요 · 일시 : 2001. 10. 11. · 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주출입구 전면 야외광장 · 행사내용 : 기념조형물 제막 및 디자인도시 성남 선언식 ○추진경과 · 선언문은 코리아디자인센터의 상징조형물과 함께 동판으로 제작·부착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우리시의 Land-Mark로 될 것임에 · ICSID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순종교수에게 1차 “안”작성 의뢰 · 서울대학교 박동규교수에게 2차 선언문작성 의뢰 · 디자인의 가치, 성남의 창조적 도시민체성, 평화로운 창조도시 지향의 관점에서 작성	디자인지원 사 업 소	행정경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건명	부의안건요약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16	성남시다목적 복지회관및보육 시설설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명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목적인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는 단체등으로 변경(제7조) ○ 위탁의 취소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제15조①항) ○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복지회관의 수탁 및 시설장 자격을 상실한다(제15조③항) ○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포함(제18조제3호) ○ 복지회관 명칭을 복지회관 소재지 위치에 맞게 변경(별표1) ○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시 동절기·하절기를 명시(별표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17	성남시보육사업 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1999. 6. 2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왔으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실 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여성복지과	사회복지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주요골자 ○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격자 중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다 확실히 함.(안 제14조제1항) ○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됐을 경우 영구적으로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참여할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하고 시설장으로서의 임용자격 제한기간 2년을 수탁 자격 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함.(안 제17조제2항) ○ 위탁 취소된 모든 수탁체의 시설장에 대한 2년간 수탁 및 시설장 임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의무 불이행 또는 행위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한 위탁 취소 시에만 적용하여 임용된 시설장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자기 과실로 해임요구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제한을 신설함. (안 제17조제3항)		
18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분당구 야탑동에 건립중인 여성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시에 거주하는 여성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시설출입 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여성복지과	사회복지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제9조) ○ 위탁자의 자격을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또는 회관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함 (안 제10조)		
19	성남시수정문화 정보센터관리 사무의위탁운영 동의안	□ 제안이유 ○ 성남시립중앙도서관 시설이 완공되고 2001. 12 31일까지 한시적 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정문화정보센터를 민간위탁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수탁 사무 : 성남시 수정문화정보센터내 시설운영 및 사무추진 장터 ○ 위·수탁기간 : 2년으로 하며 2년단위로 연장가능 ○ 운영방법 : 위탁자는 성남시의 조례 및 규칙과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협약서 안 제6조) ○ 위탁조건 (협약서 안 제7조) ○ 재원의 부담 (협약서 안 제9조)	수정문화 정보센터	사회복지
20	성남시쓰레기 소각장건설특별 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2000. 5. 12 한국토지공사와 분당신도시 생활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 협약이 종결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정 소 과	사회복지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21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및공급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판매·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과 봉투판매인들의 봉투구입에 많은 불편이 있어 ○ 종량제봉투 판매·공급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금사고 예방 및 봉투판매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성남시사부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범위 : 쓰레기종량제봉투, 불연성규격마대, 대형폐기물스티카를 지정판매소까지 판매·공급업무 및 관계된 장비·시설물 관리업무 일체 ○ 위탁기간 : 3년 ○ 운영·관리비 지원 :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금액 ○ 책임의 한계 : 수탁관련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짐 ○ 계약의 해지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조례 개폐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정지하였을때	청 소 과	사회복지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22	성남시건축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도시의 미관증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업무 대행 범위를 정함(안 제8조) ○ 재해위험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제49조, 제50조, 제50조의1) ○ 종전에는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범위로 하였으나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미관지구로 한정함(안 제55조의1) ○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적용의 범위에 대지와 도로사이에 접한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에 완충녹지를 포함함(안 제56조2항)	건 축 과 도시건설